

의안번호	제412호
------	-------

제 출 연 월 일  
2017. 10. .

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	출	자
예	산	군 수

#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10. .  
제 출 자 : 예산군수

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세입·세출 예산 과목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세입 예산 재원의 세분화(안 제2조)
- 나. 세출 예산 내용의 세분화(안 제3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 제9조 및 학교급식법 제3조 **【붙임 1】**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기 타
  - 1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  - 2) 입법예고 : 2017. 9. 20. ~ 10. 10.(20일간)
  - 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**【붙임 2】**

예산군 조례 제 호

##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학교급식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”을 “다음 각 호의 재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학교급식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
2. 일반회계 전입금
3. 그 밖의 수익금 등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센터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
2. 인건비
3. 배송비
4. 공공요금
5. 그 밖의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2조(세입) 예산군 학교급식지원 센터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세입은 <u>학교급식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</u>으로 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조(세입) -----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 재원</u>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학교급식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</u></li> <li>2. <u>일반회계 전입금</u></li> <li>3. <u>그 밖의 수익금 등</u></li> </ol>
<p>제3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<u>센터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, 인건비, 배송비, 공공요금, 그 밖의 지출 등으로 한다.</u></p>	<p>제3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<u>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센터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</u></li> <li>2. <u>인건비</u></li> <li>3. <u>배송비</u></li> <li>4. <u>공공요금</u></li> <li>5. <u>그 밖의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</u></li> </ol>

【붙임 1】

## 관계 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□ 학교급식법

제3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,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“이라 한다)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【붙임 2】

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  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 : 농정유통과장

담당자 현황

【농정유통과장 윤기성, 급식지원팀장 김명주, 담당자 한상경 ☎ 339-8277】